

“내가 지킨 정보보안 신뢰받는 서울메트로!”



서울메트로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자전거 경사로 설치·운영관련 관련법 개정 알림

1. 행정자치부 생활공간정책과-631호(2017.2.16.) 「자전거 이용시설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알림과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확보와 자전거 이용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자전거 이용시설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자전거 경사로 설치·운영 시 반영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전거 경사로 설치기준 주요 개정사항

- 자전거 경사로 설치 최소간격 축소(0.35m → 0.2m)

※ 경사로 설치간격이 0.2m인 경우 자전거를 약 9도 기울이면 벽면과 자전거 핸들이 닿지 않음

구분	현행	개정	경사로 단면도	비고
자전거 경사로 설치 간격(W1)	35cm 이상	20cm 이상		
자전거 경사로 설치 폭(W2)	15cm 이상	15cm 이상 (홈의 경우 9cm)		

- 점자블록 설치 및 경사로 돌출부 마감 등 안전기준 신설

【현 행】



【개 선】



- 엘리베이터 등 자전거 경사로 외에 자전거를 이동시킬 수 있는 수단이 설치된 경우 자전거 경사로 설치 예외 규정 신설

※ 부산·대구·대전 지하철은 자전거 이용자의 엘리베이터(E/L) 사용을 허용

나. 협조사항

- 자전거 경사로 설치기준 준수 : 건축사업소
- 자전거 이용자 엘리베이터 이용방안 검토 : 영업처, 기계처

- 붙임 : 1. 관련문서 1부
2. 관련법 개정 내용 1부. 끝.

건축처장

수신자 영업처(영업처장), 기계처(기계처장), 건축사업소(건축사업소장)

차장 **홍승복** 부장(업무대행) **우명근** 건축처장 **이종우** 02/21

협조자

시행 건축처-1019(2017.02.21.) 접수 ()

우 06693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5(방배동) / www.seoulmetro.co.kr

전화 5583 전송 5589 / h1jsfa6481@seoulmetro.co.kr / 대시민공개